

## 8.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88호 1999. 5. 1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온돌·비상급수설비·절수설비·환기설비·위생설비·전력용 배관·맨홀 등의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아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제92조 내지 제103조”를 “건축법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 및 제59조의3과 동법시행령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1조의3”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영 제91조의3제2항”을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실내수영장·냉동냉장시설”을 “냉동냉장시설”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

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31미터”를 각각 “41미터”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영 제90조제3항”을 “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제11조 ·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본문중 “영 제93조제1항 단서”를 “영 제87조제2항”으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한다.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본문중 “건축물에”를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 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1호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별표 5의 비고 1 및 비고 2”를 “별표 5의 비고 2”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2.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제22조 본문중 “시장 · 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업무시설 · 연구소”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숙박시설 · 기숙사 · 유스호스텔 · 병원”을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로 하며, 동조제4호중 “일반목욕장 · 특수목욕장 · 실내수영장”을 “제1종 균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관람집회시설 · 학교”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 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로 한다.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 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 시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란중 “30”을 “32”로 한다.

별표 4의 지역란의 남부중 “부산광역시”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로 한다.

별표 5의 건축물의 부위란중 “공동주택의 측벽”을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측벽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되는 것은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주택회보